



등기사항전부증명서(현재 유효사항) - 집합건물 -

고유번호 1103-2000-005974

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5-1외 3필지 장충동라임카운티아파트 제3층 제302호

【 표 제 부 】 (1동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 수	소재지번, 건물명칭 및 번호	건 물 내 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2		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5-1, 105-4, 105-5, 105-6 장충동라임카운티아파트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0가길 38	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10층 공동주택(아파트) 1층 691.98㎡ 2층 570.07㎡ 3층 570.07㎡ 4층 570.07㎡ 5층 570.07㎡ 6층 570.07㎡ 7층 570.07㎡ 8층 569.92㎡ 9층 527.23㎡ 10층 402.89㎡ 지하1층 1,874.07㎡ 지하2층 218.36㎡ 내역1층:주차장, 다목적실, 로비 2층-10층:아파트 지하1층:주차장, 발전기실, 창고 지하2층:펌프실, 전기실	2011년10월31일 도로명주소 2015년3월9일 등기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표시번호	소 재 지 번	지 목	면 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.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5-1 2.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5-4 3.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5-5 4.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5-6	대 대 대 대	446.7㎡ 469.1㎡ 364㎡ 812.8㎡	2000년12월21일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5-1외 3필지 장충동라임카운티아파트 제3층 제302호

표시번호	소재지번	지목	면적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2				별도등기 있음 1토지(을 71,2번근저당권설정등기), 2토지(을 71,2번근저당권설정등기), 3토지(을 71,2번근저당권설정등기), 4토지(을 71,2번근저당권설정등기) 2000년12월21일
3				2번 별도등기말소 2001년1월20일

【 표 제 부 】 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표시번호	접수	건물번호	건물내역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2000년12월21일	제3층 제302호	철근콘크리트조 244.47㎡	도면편철장제3책269호

(대지권의 표시)

표시번호	대지권종류	대지권비율	등기원인 및 기타사항
1	1, 2, 3, 4 소유권대지권	2092.6분의 121.52	2000년12월15일 대지권 2000년12월21일

【 갑 구 】 (소유권에 관한 사항)

순위번호	등기목적	접수	등기원인	권리자 및 기타사항
2	소유권이전	2002년3월9일 제13247호	2002년2월2일 매매	소유자 박한규 410621-***** 서울 중구 신당동 414-13

【 을 구 】 (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)

기록사항 없음				
---------	--	--	--	--

-- 이 하 여 백 --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5-1외 3필지 장충동라임카운티아파트 제3층 제302호

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

열 램 용

*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.

* 기록사항 없는 갑구, 을구는 '기록사항 없음' 으로 표시함.

* 증명서는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 가능함.

* 본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.

열람일시 : 2021년05월25일 18시48분56초

3/3

주요 등기사항 요약 (참고용)

[주 의 사 항]

본 주요 등기사항 요약은 증명서상에 말소되지 않은 사항을 간략히 요약한 것으로 증명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. 실제 권리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발급된 증명서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고유번호 1103-2000-005974

[집합건물]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105-1외 3필지 장충동라임카운티아파트 제3층 제302호

1. 소유지분현황 (갑 구)

등기명의인	(주민)등록번호	최종지분	주 소	순위번호
박한규 (소유자)	410621-*****	단독소유	서울 중구 신당동 414-13	2

2. 소유지분을 제외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 (갑 구)

- 기록사항 없음

3. (근)저당권 및 전세권 등 (을 구)

- 기록사항 없음

[참 고 사 항]

- 가. 등기기록에서 유효한 지분을 가진 소유자 혹은 공유자 현황을 가나다 순으로 표시합니다.
- 나. 최종지분은 등기명의인이 가진 최종지분이며, 2개 이상의 순위번호에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지분을 합산하였습니다.
- 다. 지분이 통분되어 공시된 경우는 전체의 지분을 통분하여 공시한 것입니다.
- 라. 대상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'확인불가'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권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